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 학생숙소 내규

제정 2000. 1. 2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실험목장 학생숙소(이하 “숙소”라고 한다)에서 학생들이 규율과 질서가 있고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숙소)** 1. 실험목장 내의 학생숙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본관 학생숙소
- ② 실험실 및 연구축사내 숙소

**제3조(입소 자격, 선발 및 인원)** 1. 본관학생숙소

- ① 동물자원과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결방이 있을 경우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부 4년생으로 실험실에서 진학을 준비중인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입소 배정은 전공별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1년 단위로 거주학생을 모집하되 퇴소 등으로 인해 여석이 있을 경우 접수된 입소지원서(서식4)에 의거 목장장이 선발한다(매년 2월 입소 지원서 갱신).
- ③ 6개 호실에 2명씩 1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다.
- ④ 전공별 실험실에 학부생 또는 훈련생이 실험실습지원에 참가하는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목장장이 추가 배정 할 수 있다.

2. 실험실 및 연구축사내 숙소

해당 숙소의 실험 및 연구 책임교수가 추천하여 목장장의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4조(입소 자격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 할 수 없다.

- 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②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③ 휴학중인 자
- ④ 기타 목장장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하는 자

**제5조(숙소 거주학생 생활 수칙)** 거주학생은 건전한 공동 생활과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숙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공용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화재나 기타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 및 손실은 개인이 변상한다.(서울대학교 기숙사 규정 제7조 적용)

- ① 숙소 내에서의 음주, 폭언, 폭행, 도박 및 소란행위

- ② 외부인에 대한 숙식 제공 행위
- ③ 행정실과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기물의 손상 및 파손행위 (열쇠고리부착, 전기인입 등)
- ④ 화재 위험이 있는 일체의 행위와 기타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⑤ 공동 취사장 외의 각 호실에서의 취사 행위
- ⑥ 숙소 청결 불이행(호실 및 복도, 공동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 ⑦ 기타 숙소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다른 거주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6조(감독)** 학생숙소의 1차적인 감독은 목장장이 한다.

**제7조(보건 및 위생)** 숙소 거주학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제8조(퇴소처분)** 숙소 거주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목장장은 퇴소처분 한다.

- ① 숙소 거주학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② 거주학생 이외 일반학생 및 외부인에게 숙식제공자
- ③ 열쇠분실 및 집기물 파손 후 변상치 않거나 숙소를 훼손한 자
- ④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⑤ 청소불결 및 임무소홀(당번임무 기피행위), 쓰레기 분리 미 이행자
- ⑥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방을 사용치 않고 방치할 때

**제9조(퇴소 절차)** 1. 본관 학생숙소의 퇴소는

- ① 퇴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소 5일전까지 행정실에 퇴소 신고서를 제출
- ② 퇴소일로 결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퇴소한다.
- ③ 퇴소당일 방 열쇠 및 냉난방기 리모컨을 반환하고 사물의 반출을 확인 받은 후 퇴소

2. 실험실 및 연구축사 내 숙소

해당 축사의 실험 및 연구 책임 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제114호, 2000.1.20.)

- ① 이 시행세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